

「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4. 12 31(수) 평창군수(보건사업과)

나. 회부일자 : 2015. 01. 13(화)

다. 상정일자 : 2015. 01. 19(월) 제208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보건사업과장 채정희)

-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본 조례의 내용인 공중보건 의사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하여 「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자치단체 조례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홍금숙)

- 「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」는 임상연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과 공중보건 의사의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9년 4월 17일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,

-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본 조례의 내용인 임상연구비 지급과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자치단체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의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

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